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96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김성원 · 김선교 · 고동진
이인선 · 김태호 · 이종배
김정재 · 박충권 · 구자근
정동만 · 박성훈 · 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톱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톱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톱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톱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톱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범망을 피해 스톱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톱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훼손하는”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훼손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u>훼손하는</u> 행위	마. ----- ----- ----- <u>직접 또는 제3자를</u> <u>통하여 훼손하는</u> -----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